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등본입니다.

2023. 2. 24.

법원주사보 박 성



사 건 2022고단2750 강제추행

피 고 인 이순국 (710516-0000000), 농업
주거 [REDACTED]
등록기준지 [REDACTED]

검 사 김태훈(기소), 이현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오

판 결 선 고 2023. 2.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 10.경 강원 철원군 영서로 9358에 있는 파프리카 선별장에서





야간근무 중이던 피해자 주○○(여, 33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내려치고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주○○의 법정진술

1. 주○○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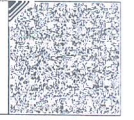
1. 수사보고서(피해자 급여내역 자료 첨부) 및 급여내역 1부

1. CCTV영상 검색 결과사진 1장, 파프리카 선별장 내부사진 3장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그 과정 및 태양, 추행 이후에 전개된 상황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면서도 실제 경험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묘사하기 힘들어 보이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해자는 현장에서는 곧바로 뒤돌아보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고, 야간근무 종료 이후 주방에서는 전성욱이 동석한 가운데 피고인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 ...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신 거냐? 그건 잘못된 거다. 기분이 안 좋았다'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¹⁾, ③ 당시 피해자의 작업위치 뒤편으로는 별다른 신체접촉 없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여유공간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증거 기록 68쪽 참조), 설령 그 공간이 다소 비좁았다 하더라도 거동, 제스처, 언어 등의 방법만으로도 피고인이 내세우는 '비켜달라는 의사'의 전달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부하직원에 대한 '격려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 하더

1)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현장에서 곧바로 '이거 성추행이에요'라고 항의하였다는 취지이다.





라도, 판시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가 객관적으로 기습추행의 범주 내에 있고 주관적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이상, 그러한 격려 의사의 병존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격려행위로 둔갑시킬 수는 없는 것인 점, ⑤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 전성욱 등이 공동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과 쟁송 중에 있기는 하나(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2021. 8. 25.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자 위 영농조합법인이 2021. 10. 1. 피해자를 복직시킨 바 있고, 이어 피해자가 '2021. 10. 9.자 부당해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2022. 2. 3.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용된 뒤, 2022. 4. 29.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 영농조합법인의 재심 신청이 기각된 상황이다),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애초 존재하지도 않는 추행피해를 허위로 가공해낸 것이라고 보기는 무리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불 법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 또한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태양이나 피고인의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중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신분 및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강완수 _____

